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88호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 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소방사무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소방안 전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 자치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ykh50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소방사무, 재난예방, 안전관리 강화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2.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4. 국고보조금
 - 5. 소방관련 법규 위반으로 징수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그 밖의 수입 금
 - 6.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 2.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의 사업비
 - 3. 화재 예방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 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선박 밑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 지방교부세법

-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 1. 의안명: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 2.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세 입(안 제2조)
 - 「지방세법」142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국고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세 출(안 제3조)
 - 「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른 소방시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 「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에 따른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 관리강화 등의 사업비
 -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대전광역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3.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으로 함.
 -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소방분야 연도별 투자계획을 기초하여 작성
 - 인건비 포함 세출예산 추계(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필요)
 - 지역자원시설세는 연평균 증가율 1.7% 반영(중기지방재정계획 참조)
 - 소방안전교부세 증가율은 담배소비세 연평균 증가율 0.1% 반영
 - 나. 추계 결과
 - 소방안전 특별회계 시행 시 2016년 114,658백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574,70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붙임)
 - 다. 재원조달방안 : 소방안전교부세+지역자원시설세
- 4.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없음
- 5. 작성자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지방소방경 정지권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Å	네 입	114,658,206	117,342,196	108,235,103	119,626,489	114,845,310	574,707,304
<i>\</i>	네 출	114,658,206	117,342,196	108,235,103	119,626,489	114,845,310	574,707,304
정책사업(29.80%) 행정운영경비(69.72%) 재무활동(0.48%)		34,168,145 79,939,702 550,359	34,969,974 81,808,980 563,242	32,254,060 75,461,515 519,528	35,648,694 83,403,588 574,207	34,223,902 80,070,151 551,257	171,264,775 400,683,936 2,758,593
재원 조달		114,658,150	117,342,955	108,235,673	119,626,865	114,965,910	574,829,553
의존 재원	소 계	83,012,850	81,180,655	76,546,373	87,402,565	82,197,610	410,340,053
	국고보조금	749,000	749,000	749,000	749,000	749,000	3,745,000
	소방안전교부세	12,505,150	12,517,655	12,530,173	12,542,703	12,555,246	62,650,927
	응급의료기금	1,279,000	1,279,000	1,279,000	1,279,000	1,279,000	6,395,000
	일반회계전입금	68,479,700	66,635,000	61,988,200	72,831,862	67,614,364	337,549,126
자체 수입	소 계	30,645,300	31,162,300	31,689,300	32,224,300	32,768,300	158,489,500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30,439,000	30,956,000	31,483,000	32,018,000	32,562,000	157,458,000
	세외수입	206,300	206,300	206,300	206,300	206,300	1,031,500
지방채		1,000,000	5,000,000	_		_	6,000,000
기금		-	-	-	-	-	_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